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62
----------	-------

발의연월일 : 2026. 7. 6

발 의 자 : 박대출 · 윤영석 · 김성원  
권영진 · 배준영 · 박수영  
이인선 · 김정재 · 김상훈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투명한 과세자료 제출을 통한 조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2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